
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(강준현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○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책임추궁을 위하여 예금보험
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
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‘가상자산사업자’를 추가함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
는 것으로 보았음.

(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)